

제 261 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의 (2022. 1. 25.)

# 조 례 안 심 사 보 고 서



거 창 군 의 회  
[총무위원회]



# 목 차

1	법령 인용조문 및 조직개편 등 일괄정비를 위한 거창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	1
2	거창군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15



법령 인용조문 및 조직개편 등 일괄정비를 위한  
거창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2022. 1. 25.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2. 1. 7.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2022. 1. 10.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61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22. 1. 24.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운]

가. 제안이유

- 법령의 제정·개정·폐지와 중앙·거창군 조직개편에 따른 내용이 제 때에 반영되지 못해 시행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조례상 인용 조문이나 용어 등을 일괄정비하여 이를 바로잡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일괄개정 조례 조문 : 57개

2) 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한 인용조문 및 용어 변경

나) 기본조례 개정으로 인한 인용 용어 변경

(1) 거창군정조정위원회 조례 ⇒ 거창군 군정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 거창군 위원회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3)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다) 중앙 또는 거창군 조직개편사항 반영

(1) 실과, 기획감사실 ⇒ 담당관·과, 기획예산담당관

(2) 진주보훈지청장 ⇒ 서부보훈지청장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진식]**

- 법령의 제정·개정·폐지와 조직개편 등에 따른 조례상 인용  
조문과 용어 등을 일괄 정비하여 상위법과의 일치 및 조례  
운영의 정확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 상위법 개정에 따른 「거창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등의 일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법령 인용조문 및 조직개편 등 일괄정비를 위한 거창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 법령 인용조문 및 조직개편 등 일괄정비를 위한 거창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거창군 제안제도 운영조례」의 개정)** 거창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제10조제2항 중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에 관한 규정」”을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거창군정조정위원회조례」에 따른 거창군정조정위원회”를 “「거창군 군정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거창군 군정조정위원회”로 한다.

제11조 중 “「국민제안규정」, 「공무원제안규정」”을 “「국민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으로 한다.

**제2조(「거창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조례」의 개정)** 거창군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거창군 위원회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3조(「거창군 고문변호사 운영과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거창군 고문변호사 운영과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거창군 위원회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4조(「거창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의 개정)** 거창군 규제개혁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실과·사업소장,”을 “담당관·과장, 사업소장”으로 한다.

제8조 중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거창군 위원회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5조(「거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거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를 “법 제8조”로 한다.

**제6조(「거창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의 개정)** 거창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7조 중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을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1항 본문”으로 한다.

**제7조(「거창군 통합브랜드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거창군 통합브랜드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거창군정조정위원회”를 “거창군 군정조정위원회”로 한다.

**제8조(「거창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거창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호 중 “「지방공기업법」제78조의3에 따라 설립된 경영지도법인”을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평가원”으로 한다.

**제9조(「거창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의 개정)** 거창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거창군 위원회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0조(「거창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조례」의 개정)** 거창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거창군 위원회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1조(「거창군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의 개정) 거창군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거창군정조정위원회조례」에 따른 거창군정조정위원회”를 “「거창군 군정조정위원회조례」에 따른 거창군 군정조정위원회”로 한다.

제12조(「거창군 상징물 관리조례」의 개정) 거창군 상징물 관리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거창군정조정위원회”를 “거창군 군정조정위원회”로 한다.

제13조(「거창군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조례」의 개정) 거창군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거창군정조정위원회조례」에 따른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창군 군정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거창군 군정조정위원회”로 한다.

제14조(「거창군 용역 관리·운영 조례」의 개정) 거창군 용역 관리·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제14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제15조(「거창군 외국인주민 지원조례」의 개정) 거창군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거창군 위원회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6조(「거창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의 개정) 거창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특허법」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을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지방재정법」제72조의 규정”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조”로 한다.

**제17조(「거창군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조례」의 개정)** 거창군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거창군 민원사무착오 및 지연보상규정”을 “「거창군 민원 처리의 착오 및 지연에 대한 보상규정”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본청실과장”을 “본청 담당관·과장”으로 한다.

**제18조(「거창군 조례제정·개폐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의 개정)** 거창군 조례제정·개폐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 지방자치법 」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2조 중 “19세 이상”을 “18세 이상”으로 한다.

**제19조(「거창군 명예군민증서 수여조례」의 개정)** 거창군 명예군민증서 수여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거창군정조정위원회”를 “거창군 군정조정위원회”로 한다.

**제20조(「거창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거창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제8호를 삭제한다.

제3조제2항제5호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2조”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6조”로 한다.

**제21조(「거창군 행정리개발위원회 조례」의 개정)** 거창군 행정리개발위원회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이 규정에 의한”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7호나목에 따른”으로 한다.

**제22조(「거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개정)** 거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142조 및「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을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로 한다.

**제23조(「거창군 거창승강기밸리 조성 및 지원 조례」의 개정)** 거창군 거창승강기밸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를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21조”로 한다.

제17조 중 “「거창군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조례」”를 “「거창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조례」”로 한다.

**제24조(「거창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조례」의 개정)** 거창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거창군정조정위원회”를 “거창군 군정조정위원회”로 한다.

**제25조(「거창군 청소년출입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거창군 청소년출입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거”를 “「청소년보호법」 제31조에 따라”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법 제2조 제5호에서 규정한”을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26조(「거창군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의 개정)** 거창군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청소년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를 “「청소년 기본법」 제11조에 따라”로 한다.

제10조 중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거창군 위원회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7조(「거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조례」의 개정)** 거창군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운영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거창군 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거창군 위원회 수당과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8조(「거창군 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의 개정)** 거창군 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온천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온천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로 한다.  
제2조제3항제3호 중 “실과장급 이상”을 “과장급 이상”으로 한다.  
제8조 중 “「거창군 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거창군 위원회 수당과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9조(「거창군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조례」의 개정)** 거창군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30조(「거창문화원사 관리·운영 및 거창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거창문화원사 관리·운영 및 거창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31조(「거창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거창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 중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를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로 한다.

**제32조(「거창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조례」의 개정)** 거창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중 “경상남도 거창군교육청 교육장”을 “경상남도 거창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한다.

제4조제3호 중 “경상남도진주보훈지청장”을 “경상남도 서부보훈지청장”으로 한다.

**제33조(「거창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거창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 중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거창군 위원회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34조(「거창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의 개정)** 거창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거창군 위원회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35조(「거창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의 개정)** 거창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호, 제11조제1호 중 “구판장”을 “생활용품 판매장”으로 한다.

**제36조(「거창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의 개정)** 거창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담당실과장”을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37조(「거창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의 개정)** 거창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 단서”를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 단서”로 한다.

**제38조(「거창군 에너지자립도시 조성 조례」의 개정)** 거창군 에너지자립도시 조성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이 조례는 「에너지법」 제3조에 따라”를 “이 조례는”으로 한다.

**제39조(「거창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에 관한 조례」의 개정)** 거창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4항”으로 한다.

제2조 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4조제3항 단서 및 제15조제2항 단서”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4조제3항 단서 및 제15조제4항 단서”로 한다.

**제40조(「거창군 최고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거창군 최고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실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한다.

**제41조(「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의 개정)**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창군 군정조정위원회”로 한다.

**제42조(「거창군 애향장려금 지원조례」의 개정)** 거창군 애향장려금 지원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거창군정조정위원회”를 “거창군 군정조정위원회”로 한다.

**제43조(「거창군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의 개정)** 거창군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제3호 중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44조(「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의 개정)** 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중 “국군기무부대관계자”를 “339군사안보지원부대 안보지원관”으로 한다.

**제45조(「거창군 도로조명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거창군 도로조명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46조(「거창군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주민의견수렴절차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거창군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주민의견수렴절차 등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거창군정조정위원회”를 “거창군 군정조정위원회”로 한다.

**제47조(「거창군 사과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조례」의 개정)** 거창군 사과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48조(「거창군 농업인 직거래장터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의 개정)** 거창군 농업인 직거래장터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49조(「거창군 농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의 개정)** 거창군 농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50조(「거창군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의 개정)** 거창군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51조(「거창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거창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역보건법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로 한다.

**제52조(「거창군 헌혈장려 조례」의 개정)** 거창군 헌혈장려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을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으로 한다.

제2조 중 “「혈액관리법」 제4조제1항과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을 “「혈액관리법」 제4조의3제3항과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으로 한다.

**제53조(「거창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의 개정)** 거창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법”을 “「국민건강증진법」”으로 한다.

**제54조(「거창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의 개정)** 거창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수도법」 제47조제2항 및 제55조제2항”을 “「수도법」 제47조제2항 및 제55조제3항”으로 한다.

**제55조(「거창군 수돗물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거창군 수돗물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2”를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3”으로 한다.

**제56조(「거창사건희생자합동묘역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거창사건희생자합동묘역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을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제57조(「거창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 거창 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9조제2항제2호 중 “실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거창군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 1. 25.

##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2. 1. 4. 최정환 의원 등 11명
- 나. 회부일자 : 2022. 1. 10.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61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22. 1. 24.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최정환 의원]

### 가. 제안이유

- 거창군의 다양한 교육수요를 반영한 교육여건 개선과 공감하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거창군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명품 교육도시 거창군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1) 설치 및 기능에 대해 규정(안 제2조)
- 2) 협의회 구성에 대해 규정(안 제3조)
- 3) 임기 및 위원장의 임무에 대해 규정(안 제4조, 안 제5조)
- 4) 회의에 대해 규정(안 제6조)

- 5) 위원의 해촉에 대해 규정(안 제7조)
- 6) 실무분과위원회에 대해 규정(안 제8조)
- 7) 의견의 청취에 대해 규정(안 제9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진식]

- 본 조례안은 다양한 교육수요를 반영한 교육여건 개선과 공감하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거창군 교육발전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 민·관·학 협력을 통한 거창군 교육발전 방향 및 정책의 연구·제안과 교육개선 사항 등을 협의·조정·자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명품 교육도시로의 거창군 발전을 위해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 법령에 따라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거창군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거창군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의 다양한 교육수요를 반영한 교육여건 개선과 공감하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거창군 교육발전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 및 자문하기 위해 거창군 교육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설치한다.

1. 교육발전 방향 및 정책의 연구·제안
2. 학교 환경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
3. 우수학교 육성·유치에 관한 사항
4.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의견수렴 및 민·관·학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5. 지역인재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발전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거창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협의회 소관업무 담당 국장과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 21조에 따라 군수가 위촉한다.

1. 거창군의회가 추천하는 거창군의회 의원
2. 거창교육지원청 관계자
3. 군 소재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관계자
4. 군 소재 초·중·고·대학교 학생
5. 그 밖에 교육에 관심있는 언론사·시민단체·주민

⑤ 협회회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소관업무 담당 주사로 한다.

**제4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협회회를 대표하고, 협회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 전에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둬야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실무분과위원회)** ① 협의회는 업무수행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실무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유·초등분과
2. 중·고등분과
3. 대학분과

② 제1항 각 호의 실무분과위원회는 분과별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9조(의견의 청취)**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문기관,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으며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거창군 위원회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 및 실무분과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